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 모집공고

‘창업하기 좋은 도시’ 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5월 21일
성남산업진흥원 원장

1 센터개요

【 위례 창업지원주택 】

<table>
<tr><td>

[센터 위치]</td><td>
[건물 외부]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▸ 개 소 : 2021. 7월
▸ 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53 (위례 중앙초등학교 옆)
(성남위례(A2-15BL)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3601동 1층)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3601동
1층</td><td>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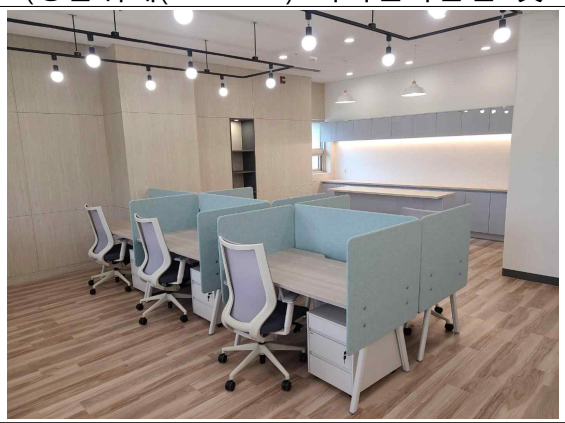 </td><td> </td></tr>
<tr><td>[업무공간 1]</td><td>[업무공간 2]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▸ 면 적 : 252.34㎡ / 76평
▸ 운영시간 : 평일 09:00 ~ 21:00 ※ 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(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)
▸ 개방형 업무공간 16석 내외, 회의실, 탕비실
▸ 책상, 의자, 사물함 등 집기 제공 / 제조시설 입주 불가</td></tr>
</table>

【 하이테크밸리 창업지원주택 】

구 분	개방형	독립형
설립일	2024. 2월	
위치	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41, 성남재생산단 A3블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2층 (상대원동)	
면적 (전용)	79㎡(약 24평)	50㎡(약 15평)
공간구성 (보육규모)	· 입주공간 14석(인석) / 4개사	· 입주공간 1개 호실(8인실)
	[지원시설] 회의실 3개, 휴게공간	
이용시간	**월 ~ 금(09시 ~ 21시)** ※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센터 이용 불가	
센터전경		

【 킨스타워 】

구 분	개방형	독립형
	킨스타워 19층, 21층	**킨스타워 20층**
설립일	2017. 2월	2017. 12월
위치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, 19~21층 (킨스타워, 정자동) ※ 정자역 3,4번 출구 바로 앞	
면적 (전용)	1,045㎡(약 315평)	700㎡(약 210평)
공간구성 (보육규모)	· 입주공간 102석(4, 6인석) · 회의실 3개, 라운지, 강의장, 교육장, 휴게공간	· 입주공간 13개 호실(6, 10, 12, 14인실) · 회의실 4개, 세미나실, 휴게공간
이용시간	**월 ~ 금(09시 ~ 21시)** ※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센터 이용 불가	**365일 24시간**
센터전경		

2 모집개요

□ 모집대상

센터명	개방형	독립형
위례 창업지원주택	지식 서비스업, 제조업 창업 5년 이내 (예비) 창업기업	-
하이테크밸리 창업지원주택	지식 서비스업, 제조업 창업 7년 이내 (예비) 창업기업	-
킨스타워	-	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

* 킨스타워(독립형)은 예비창업자 지원불가,

** 업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, 제조시설 입주불가

□ 모집규모 : 총 7개사 내외

센터명	개방형		독립형	
위례 창업지원주택	3개사 내외	1 ~ 4인석	-	-
하이테크밸리 창업지원주택	3개사 내외	1 ~ 4인석	-	-
킨스타워			1개사	6인실 × 1개사

* 선정기업의 좌석 규모(개방형) 및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 다소 변동 가능

** 센터별 중복 신청 불가 (택1)

***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

□ 모집기간 : ~ 2024. 5. 30(목), 오전 11시 까지

※ 유의사항

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1일 이전**에 **'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신청'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. 마감시간 30분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 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구 분	신청자격	비 고
예 비 창업자	▸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(개인/법인)이 되어 있지 않은 자 **※ 입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**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」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(기업) ※ 첨부문서 참조
창업기업 (개인/법인)	▸**(공고일 기준) 창업 7년 이내 기업** ***위례는 창업 5년 이내** - 개인기업 : 사업자등록증명상 '개업연월일' 기준 - 법인기업 : 법인등기부등본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 ▸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	
지 원 "제외"대상	▸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▸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▸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,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자(기업) ▸성남창업센터 이외에 **중소벤처기업부 지정 BI센터 졸업 이력이 있는 기업** ※중기부 지침 (중기부 지정 BI센터 확인) https://www.smes.go.kr/binet/incu/center/list.do ▸숙박업, 임대업, 유흥업,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	

□ 입주요건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/tr>
<tr><td>입주기간</td><td>
<table>
<tr><th>센터명</th><th>입주기간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위례
창업지원주택</td><td>2024. 7. 1 ~ 2025. 6. 30 (1년)</td><td>-</td></tr>
<tr><td>하이테크밸리
창업지원주택</td><td>2024. 7. 1 ~ 2024. 12. 31 (6개월)</td><td>추가모집</td></tr>
<tr><td>킨스타워</td><td>2024. 7. 1 ~ 2024. 12. 31-(6개월)</td><td>중도퇴소 계약승계</td></tr>
</table>
※ 킨스타워 및 하이테크밸리는 계약 승계 및 추가모집으로 인해 12월 말 계약 종료.
입주 연장평가 후, 평가 결과에 따라 1회(1년) 연장 가능
※ 진흥원 운영 창업센터(정글ON) 입주 총량 최대 3년, 입주성과(투자, 고용 등) 우수 기업에 한해 추가 1년 연장 가능
</td></tr>
<tr><td>입주비</td><td>
<table>
<tr><th>센터명</th><th>입주관리비(보증금)</th><th>멤버십비(사용료)</th></tr>
<tr><td>위례 창업지원주택</td><td>좌석당 20만원</td><td>좌석당 5만원/월</td></tr>
<tr><td>하이테크밸리
창업지원주택</td><td>좌석당 20만원</td><td>좌석당 5만원/월</td></tr>
<tr><td>킨스타워
(독립형)</td><td>좌석당 30만원</td><td>좌석당 10만원/월</td></tr>
</table>
※ 입주관리비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함
※ 멤버십비는 입주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전체 비용을 일시불로 전액 현금 납부
• 예시1 (위례 개방형/2인석)
- 입주관리비 : 20만원 × 2인 = 40만원 (이행보증보험)
- 멤버십비 : 5만원 × 2인 × 12개월 = 120만원
• 예시2 (킨스타워 독립형/6인실)
- 입주관리비 : 30만원 × 6인 = 180만원 (이행보증보험)
- 멤버십비 : 10만원 × 6인 × 6개월 = 360만원
</td></tr>
<tr><td>기 타</td><td>○ 성남창업센터 운영지침(별도 배포 예정) 준수 의무
• 입주 및 지원 : 입주 선정평가, 입주기간 및 연장, 입주승인 취소 등
• 행위제한 및 퇴소
• 시설물 관리,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
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성남창업센터를 본사로 사업자등록
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한 입주 공간(좌석)의 근무인원 확보</td></tr>
</table>

4 선정절차 및 방법

□ **서류평가**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
□ **발표평가** :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(대면)평가

□ **평가기준** : 창업자 및 팀 역량, 기술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성장전략 등

□ **결과통보** : (선정, 미선정팀) 개별 통보

□ **접수 및 선정절차**

구 분	시 기	내 용
공 고	**'24. 5월 4~5주차**	· 진흥원 홈페이지 등
접 수	**공고일 ~ '24. 5. 30, 11시**	·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서류평가 일정	**~ '24. 6월 2주차**	· 이메일 결과 안내
발표평가 일정	**'24. 6월 3주차**	· PT형식 발표평가 진행
최종 선정기업 안내	**'24. 6월 4주차**	· 이메일 결과안내(선정,미선정)
상호대차 계약체결	**'24. 6월 말** *입주 '24. 7월	· 최종 선정기업 계약체결

*** 단,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, 모집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 가능**

□ **서류평가**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
□ **발표평가** :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(대면)평가

□ **평가기준** : 창업자 및 팀 역량, 기술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입주타당성 등

□ **결과통보** : (선정, 미선정팀) 개별 통보

□ **가점사항**

① **벤처기업인증 획득기업 (5점)** *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

② **TIPS, 투자유치 등 실적 우수 기업**

- 중기부 TIPS 선정 기업 (7점)
- 투자유치 실적(건당 1억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5점) * 보증·융자 제외
- 투자유치 실적(건당 3천만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3점) * 보증·융자 제외

③ **【창업지원주택 / 위례, 하이테크밸리】 입주민 (5점)** * 신청한 입주센터에 해당시

1)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정규직 직원(4대보험 가입)이 성남위례(A2-15BL)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입주민

2)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정규직 직원(4대보험 가입)이 성남재생산단 A3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민

※ **증빙서류 :** (1) LH와의 입주계약서 (2) 주민등록등본 사본 (주민번호 뒷자리 숨김/최근 3개월 이내)

* ①~②는 중복 가점 불가하며 고득점 순으로 최대 1개만 인정

** **증빙**(인증 확인서, 선정 공문, 협약서, 투자계약서 등) **미제출시 미인정**

*** **서류평가시 심사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 반영**(서류평가 생략시 발표평가에 반영)

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□ **접수마감** : ~ 2024 5. 30(목), 오전 11:00 까지

□ **접수방법** :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
신청시 유의사항

▮ 하단 표의 "제출서류" 중 ① ~ ⑧ 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생성

▮ 파일명 = "기업명"으로 설정

※ 모아찍기 설정 등 인쇄방식 변경 불가

□ **제출서류**

제출 서류(업로드)		법인기업	개인기업	예비창업자	
				창업경험有	창업경험無
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(지정양식)		○	○	○	
②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원)		○	○	×	
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	○	×	×	
④ 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(유효기간內)		○	○	○ (개인 납세 증명)	
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)		○	○	×	
⑥ 사실증명*	가. 사업자등록사실여부	×	×	×	○
	나. 총사업자등록내역	○	○	○	×
⑦ 가점사항(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)		○	○	×	
⑧ 인증, 지식재산권 증빙서류(보유시)		○	○	○	

【 발급경로 안내 】

- **사업자등록증명원** : (홈택스) https://www.hometax.go.kr
- **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** : (인터넷등기소) http://www.iros.go.kr/
- **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**
  - 국 세 : (홈택스) https://www.hometax.go.kr
  - 지방세 : (정부24) https://www.gov.kr
- **4대 보험 가입자 명부**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 https://www.4insure.or.kr
- **사실증명** : (홈택스) https://www.hometax.go.kr / 신청·제출-신청업무-사실증명신청
  -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, 기간 설정없이 발급

* **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대한 오기재, 허위기재,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□ **문 의 처** : 성남산업진흥원 스타트업지원부

구 분		담 당 자	연 락 처
위례/ 하이테크밸리	모집·선정	차유정 대리	☎ 031-782-3043
	시설·공간	이주연 주임	☎ 031-759-9246
킨스타워	모집·선정	허정원 과장	☎ 031-782-3041
	시설·공간	강수현 주임	☎ 031-782-3274

【별첨】 창업여부 기준표

<table>
<tr><th>신청기업</th><th colspan="3">상세 구분</th><th>창업여부</th><th>해당기업명</th></tr>
<tr><td rowspan="10">개인기업</td><td colspan="3">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</td><td>창업 기본요건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타인으로부터
상속/증여</td><td colspan="2">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종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존 개인사업자
유지</td><td colspan="2">-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기존 개인사업자
폐업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동종창업</td><td>폐업 3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폐업 3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– 2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– 2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존 법인사업자
유지 또는 폐업</td><td colspan="2">-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12">법인기업</td><td colspan="3">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</td><td>창업 기본요건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기존 개인사업자
폐업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동종창업</td><td>폐업 3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폐업 3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– 2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– 2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동종전환</td><td>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</td><td>개인사업자의
창업자 지위승계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기존 개인사업자
유지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동종창업</td><td>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
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
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
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
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자회사 여부</td><td colspan="2">법인 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
총수의 50% 초과 소유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>과점주주 여부</td><td colspan="2">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
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회사형태 변경</td><td colspan="2">동종유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종</td><td>창 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 colspan="3">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</td><td>창업아님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< 창업 인정 기준 참고사항 >

※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**동종의 범위**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※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**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
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